**Global PayOneQ**

**(글로벌 페이원큐)**

**통합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2018. 00. 00.**

|  |  |
| --- | --- |
| **(가 맹 점 명)** | **페이레터 주식회사** |
| **대표이사 \_\_\_\_\_\_\_\_\_\_\_\_\_\_\_ (STAMP)** | **대표이사 이 영 건 (STAM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에 위치한 \_\_\_\_\_\_\_\_\_(이하 “갑” 이라 함)과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3, 6층에 위치한 페이레터 주식회사(이하 “을” 이라 함)는 전자지불 및 결제 대행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세부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합법적인 유.무형의 상품 및 서비스**를 "갑"의 이용자에게 제공 시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 및 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수납하고 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상품: “을”의 서비스를 통해 대금지급이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
2. 고객: “을”의 서비스를 이용해 “갑”에게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자로 자동이체회원을 포함
3. 결제수단: 신용카드, 가상계좌, 계좌이체(인터넷뱅킹), 휴대폰, 상품권, E-wallet 등 “을” 혹은 “을”의 시스템을 통해 승인, 매입, 정산을 대행하는 모든 수단
4. 결제기관: 고객이 제시한 결제정보를 승인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각 결제수단별로 해당되는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사, 전자화폐사, 상품권발행사, 포인트운영사, 기타 결제수단의 승인기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
5. "Global PayOneQ 서비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 지불 및 결제 대행 서비스 전체를 말한다.
6. 부가서비스: 문자서비스, 본인인증(아이핀/휴대폰) 서비스, 계좌확인서비스 등 “을”이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이외의 모든 유∙무상의 서비스
7. 승인: 고객이 제출한 결제 정보를 결제기관에 전달하여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
8. 매입: 정상적으로 승인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 결제기관에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9. 정산: 결제기관으로부터 “을”의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에서 서비스 이용료 등을 차감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행위
10. 롤링리저브: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거래의 미래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담보로서 “을”이 “갑”의 거래대금의 일부를 일정기간 담보로 적립해두고, 일정금액 이상만을 ’갑’이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11. 정산 내역서: “갑”의 전월 거래에 대한 정산예정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제수단별 거래내역 및 서비스 수수료 등을 모두 집계한 월간 단위의 정산 자료 (외화환전, 송금이체 등 송금 관련 수수료 불포함)
12. 외환거래계산서 : “갑”의 정산대금의 외국환 환전과 이체시 적용된 환율, 송금금액 및 송금수수료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하는 제영수증
13. 불량매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상적인 대금 회수가 불가능한 거래
    1. “갑”이 “을”에게 제출한 거래내역과 고객이 주장하는 이용내역(금액, 상품명, 연락처, 사용처, 이용시간, 결제수단 등)이 상이한 거래
    2. “갑”의 일방적인 상품 제공 중단으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한 거래
    3. 분실/도용 등의 사유로 고객이 거래를 부인하는 거래
    4.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5. “갑”의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관련법규 또는 결제기관에서 판매를 제한한 상품의 거래
14. 환불: 승인 및 매입이 이루어진 거래를 취소하는 행위. 환불수수료(refund fee)는 환불처리 진행 시 발생된 서비스 수수료의 형태로 결제수단별로 상이하며, ‘갑’이 부담한다.

**제 3 조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이 공동 사업임을 인식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준수하여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갑"의 의무)**

1. <물품 판매에 따른 배송의무>”갑”은 반드시 ‘고객’이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배송 또는 제공을 하여야 한다.
2. <본인사용 확인 및 도용 방지> “갑”은 고객 본인의 거래 여부 및 결제정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를 도용한 고객이 “을”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거래자료의 보관 및 전달> “갑”은 고객의 회원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 등)와 거래증빙 자료(송장, 주문내역서, 택배영수증 등)를 거래발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을”이 고객의 확인, 추적, 채권환수 및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갑”은 5 영업일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의로 위조, 변조해서는 안 된다.
4. <불량매출의 확인> “갑”은 판매하는 상품과 판매방법에 있어서의 적법성 여부 및, 불량매출 발생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5. <부정거래의 확인> 고객이 결제 후 어떠한 사유로 카드사 또는 결제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갑” 또는 “을”에게 민원이 접수된 거래는 부정거래 여부를 항시 확인해야 한다.
6. <환불 및 교환> 정당한 매출취소 사유로 고객이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하거나 동일 수준의 상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본 처리와 관련한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7. <거래대금의 반환> 거래취소, 과∙오지급 등의 사유로 “갑”이 “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갑”은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을”에게 반환해야 하며, “갑”의 고의적인 대금 반환 지연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8. <시스템의 설치 및 확인> “갑”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을”이 요구하는 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올바른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 <변경사항의 통보> 본 계약서 제출 이후 “갑”의 사업자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불이행에 따른 모든 피해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10. <매출 신고의 의무> “을”이 “갑”을 대신하여 승인 및 매입대행의 업무를 수행한 매출은 “갑”의 매출로 귀속되며, “갑”은 관련법에 의거 매출신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1. <배송지연사유 고지의 의무> “갑”은 상품 판매일로부터 3일 이상 상품(서비스)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고객에게 지연 사유를 반드시 유선으로 고지해야 한다.
12.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관련 정보를 “을” 이외의 개인, 단체 등에 임의제공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에 의거 제공되어야 할 경우 필히 “을”에게 서면 통보 후 제공하여야 한다.
13. <담보의 제공> “갑”은 “을”의 “Global PayoneQ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롤링리저브를 설정하여야 하며, 금액과 담보 기간에 대해서는 양사 협의 하에 결정한다.
14. <법령의 준수> ‘갑’은 상품 판매 해당국가의 고객 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을"의 의무)**

1. <시스템 운영> "을"은 "갑"이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운영시스템과 "을"의 결제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2. <서비스 제공> "을"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제기관의 시스템 운영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 <서비스 중단> "을"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및 점검, 결제기관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단, 통신망 단절,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전쟁, 파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4. <정산대금지급> "을"은 "갑"과 합의된 정산시점에 "갑"에게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서면 또는 파일 형식으로 제공한 후에 "갑"과 "을"간에 일치된 정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 <법령의 준수> “을”은 전자금융거래법, 기타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6. <정보 제공 금지> "을"은 "고객"이 "갑"의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해 입력한 결제정보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의 책임은 면책된다.
   * 1. 수사기관, 세무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사 조세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통지 받아 이에 응할 경우
     2. “을"이 정한 기간 동안 미수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 6 조 (서비스 수수료)**

1. "갑"은 "을"의 전자결제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수수료는 정상 매출 건을 기준으로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요율 및 금액에 의거한다. “갑”과 “을”의 수수료 조건은 [별첨2]의 신청서에 의한다.
3.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기관 등의 변동사항에 따라 "갑"에게 반영될 수 있으며 "을"은 변경적용 이전에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수수료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Global PayoneQ” 서비스의 공지사항, Email,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며, 변경된 수수료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갑”이 변경된 수수료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갑”이 특정 결제 방식 추가를 “을”에게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며, 신규 결제수단 추가에 따른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정산)**

1. “을”은 ‘결제기관’으부터 정상 입금된 거래에 한해 서비스 수수료, 롤링리저브, 외환 환전,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2. 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정산대금은 해외PG사, 매입사 등이 지급한 통화를 따른다. 정산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는 양사 간 별도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정산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 ”을”이 “갑”에게 정산시 발생하는 외화환전, 송금이체 등의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4. (정산절차)

①“갑”은 “을”이 제공하는 관리자페이지에서 정산내역을 25일 확인한다.

②“갑”은 확인한 정산금액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을”이 지정한 담당자에게 invoice를 28일까지 송부하여 정산 요청을 한다. 단, 이상이 있는 경우 “갑”은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을”은 상기 인보이스와 정산요청 확인 후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여 확인월 마지막날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④단, 마지막날이 공유일인 경우 그다음 정상 영업일날 날 지급한다. 또한 정산금액이 USD $100 미만이거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산일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일의 지급을 유예하고 차회 정산일에 합산하여 정산한다.

⑤지급보류(유예) 및 현금담보, 롤링리저브로 인한 가산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롤링리저브 기간이 해제된 롤링리저브 금액의 경우 상기 정산절차에 의하여 정산지급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선취 또는 후취한 모든 수수료, 등록비, 관리비에 관해 월1회 invoice를 발행한다.
3. invoice는 이메일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송한다. 단, 한국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 발행한다.
4. 롤링리저브 및 외환환전송금 수수료는 [별첨 2]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 8 조 (환전 및 송금)**

1. 정산통화를 지급통화와 다르게 요청할 경우 별도 협의하여 환전 및 송금 처리한다.
2. <환전기준 및 환전수수료>”을”이 “갑”에게 지불하는 정산대금의 미국달러, 일본엔화, 한국원화로의 은행간 금리 환전기준(the inter-bank exchange rate)은 “을”이 적용하는 송금 시 9시 이후 첫 번째 보내실 때 환율 (https://spib.wooribank.com/pib/Dream?withyou=ENENG0358)을 기준으로 하며, 환차손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원화 정산인 경우 “을”이 적용하는 송금 시 9시 이후 첫번째 받으실 때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단, 페이팔의 경우 페이팔에서 제공하는 환율을 따른다.

1. <외환 송금수수료(전신료 포함)> 이체 송금수수료는 “을”의 주거래 외국환은행 송금수수료 기준에 따르며, “을”은 그 적용이 최소가 되도록 노력한다.
2. ”을”은 “갑”의 정산금액에서 차감된 외환 환전, 송금수수료의 확인을 위해 외국환은행에서 발행한 외환거래계산서 사본을 이메일 혹은 관리자화면으로 별도 제공한다.

**제 9 조 (불량매출의 처리 및 담보금 설정)**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며, 결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갑”의 동의 없이 매출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갑”의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조 13항의 불량매출 또는 부정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3. 대금 지급 1영업일 전까지 “갑”이 고객에게 상품 제공을 완료치 않거나, 5일 이상 배송지연 시 그 사유를 고객에게 유선, 이메일 등 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4. “갑”이 상품 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경우
5. “갑”이 사업자정보 및 연락처의 변경 사실을 “을”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연락거부, 사업장 폐쇄, 휴.폐업 등 정상적인 사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갑”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에게 “을”을 채권자로 하는 채무가 발생하거나 “갑”의 고객으로부터 발생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8. “을”은 전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기 지급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차회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 보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금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9. “을”은 불량매출 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시 고객 및 “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에게 추가적인 담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을”이 정한다.
10. “을”은 발생한 채권에 대해 “갑”이 제출한 담보금 혹은 롤링리저브에서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1. “갑”은 “을”에게 설정한 담보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재설정 등을 할 수 없다.
12. “갑”은 불량매출에 의한 지급 보류금 및 담보금, 법원의 가압류집행에 따른 가압류금액 등에서 발생하는 가산 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을”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13. 제1항 지급보류 조치의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 보류된 정산 금액을 지급한다.

① "갑"의 해당 "사이트"에 리스크가 완전히 근절되었으며 지급보류조치를 해지하더라도 "을"에 대한 손해의 위험이 전무한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고객의 민원이나 결제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8. 계약시 ”갑”이 제공한 현금 담보금은 계약 종료 후 고객의 민원이나 결제기관의 거래 취소,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갑”에게 반환한다.

**제 10 조 (민원의 처리 및 거래 취소)**

1. 고객이 제기한 민원의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공지사항/유선/서면/이메일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갑”은 이에 대해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갑”은 고객 및 “을”의 거래 취소 요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을”이 접수한 민원의 사유가 제2조 13항에서 정한 불량매출인 경우 “을”은 해당 거래금액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정산대금이 부족하거나, 본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 조 (부도 (Chargeback) 관련 책임)**

1. “갑”은 승인된 카드 거래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도(Chargeback)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갑”은 도박류, 마약류, 가짜 제품, 무기류, 종교단체 관련 거래건 등 브랜드사(VISA, MasterCard, JCB, AMEX 등) 규정에 의거하여 불가한 업종은 제외하여야 한다.
3. 브랜드사의 부도(Chargeback) 및 패널티 부과에 따른 “을”의 손실에 대해서는 “갑”이 전적으로 배상한다.
4. 부도(Chargeback)에 대한 부도 반환은 “갑”의 정산 대금 혹은 롤링리저브에서 차감하거나 별도 청구한다.
5. 부도(Chargeback)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담보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Global PayOneQ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갑”의 거래건으로 인하여 브랜드사(혹은 원천PG사)로부터 페널티가 부과되는 경우 “갑”이 부담한다.

**제 12 조 (비밀유지의 의무)**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또는 구두상 보안을 요구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건 계약에서 명기한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일방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출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3 조 (계약 기간, 계약 변경)**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계속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본 계약조건의 내용 중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하기로 한다.

**제 14 조 (서비스의 중지 및 재사용)**

1. "갑"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치 않은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2. "갑"이 "을"이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유선, 이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 후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3. "갑"이 서비스의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1항의 서비스 중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재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4. "갑"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을"이 청구한 비용을 미납한 경우 "을"에서 제공하는 타 서비스의 청구비용에서 상계할 수 있다.
5.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비정상거래의 빈도, 민원해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갑"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15 조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유선 혹은 서면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관련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제공한 상품에 대해 고객의 불만이 다량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갑”이 고객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법 또는 부정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④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서비스이용 불만 민원이 대량 또는 빈번히 발생하여 더 이상의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갑” 또는 “갑”의 대표자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더 이상의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갑”이 “을”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업자 정보를 변경하거나, 쇼핑몰 및 사이트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⑦ “갑”의 일방적인 연락두절 및 상점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갑”이 제공하는 상품이 고객 상품 사용 국가의 관련법규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⑨ 결제기관, 브랜드사 등에서 “갑”에 대한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⑩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⑪ “갑”이 4조 11항의 배송지연사유고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⑫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상대방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

⑬ 제14조 1항의 서비스 중지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1. "을"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 발생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의 정산대금 및 "고객사"가 제공한 담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해지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갑"은 계약해지 이후라도 "Global PayOneQ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 건에 대한 민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 해지 후 서비스 종료 시점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결제기관의 대금수납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3개월까지는 정산되며, 이후 시점부터는 매년 12월 12일에 정산 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정산대금을 지급한다.

**제 16 조 (책임의 귀속 및 손해배상)**

1. 상품하자, 배송착오, 고의적인 반품거절, 서비스 미제공 등 "갑"의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업무를 위탁한 업체와 고객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와 그 업무를 수탁한 업체간 분쟁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갑"에게 있다.
2. "갑"은 "을"이 제공한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진다.
3.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동안 획득한 고객의 정보와 결제정보를 본 계약상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귀책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7 조 (소유권 및 양도금지)**

“을”이 “갑”에게 제공한 ‘Global PayOneQ 서비스’ 및 그에 따른 시스템은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 외 사항)**

본 계약 및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9 조 (관할 법원)**

1.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 약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2. 본 계약에 대한 분쟁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의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계약 효력발생)**

‘Global PayOneQ 서비스’에 대한 효력은 “갑”과 “을”의 계약서 작성일부터 발생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 시 첨부 서류**

|  |  |
| --- | --- |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통장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각 1부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인감증명서원본, 대표자신분증사본, 대표자통장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각 1부 |

**보증보험증권 가입 안내**

|  |
| --- |
|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담당자: 이현주 과장 / 02-3486-0021 또는 02-3487-0035 * “페이레터와 전자결제(페이팔)를 위한 보증보험을 요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보험증권액: 500만원권 |

[별첨 1]

**Global PayOneQ 고객사 정보**

|  |  |
| --- | --- |
| **1. Company Info** | **Please fill your company information in the form** |
| **회사명** |  |
| **회사 주소(지역, 국가 FULL표기)** |  |
| **우편번호** |  |
| **대표자명** |  |
| **회사 대표 이메일주소** |  |
| **회사 대표 전화번호** |  |
| **회사/서비스 URL** |  |
| **사업자등록번호** |  |
| **Tax Registration Number** | N/A |
| **계약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  - |
| **정산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  - |
| **CS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이메일**  **- 유선 연락처** | -  -  - |
| **Bank Details**  **- 은행명**  **- 은행주소**  **- 예금주**  **- 계좌번호**  **- Swift Code:** | -  - N/A  -  -  - N/A |

[별첨 2]

**Global PayOneQ 서비스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서비스 및 수수료 조건(VAT(10%) 별도 부과)** | | | | | | | |
| **등록비** | | | 200,000원 | | | ※ 초기 1회  ※ 단,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 **화폐 단위** | | | 승인 : USD, EUR / 정산 : KRW | | | | |
| **국가** | **결제수단** | | **수수료** | **정산주기** | | | **비고** |
| International | Paypal | | 3.9% | 익월말  (매월1일~말일) | | | \*Transaction fee : USD 0.4/건당  EUR 0.4/건당  \*Chargeback fee : USD 11/건당  EUR 12/건당  \*Currency conversion fee : 2.5% |
| **2. 담보 조건** | | | | | | | |
| **항목** | | **비용** | | | **비고** | | |
| 보증보험 | | 보험료 | | | 500만원권 | | |
| **3. 외환송금 수수료** | | | | | | | |
| **항목** | | **비용** | | | **비고** | | |
| 환전 수수료 | | 실제 소요 경비 | | | Paypal에서 적용하는 환율을 따름 | | |
| 외환 송금 수수료 | | 없음 | | |
| 전신료 | | 8,000원/건당 | | | 국내 계좌로 송금 시 면제 | | |

신 청 일 : 2018년 00월 00일 신 청 인 : (STAMP)

**▶ 서류 발송 주소입니다. 절취선을 따라 잘라서 봉투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편합니다.**

**---------------------------------------- 절 취 선 --------------------------------------------**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3, 6층 페이레터주식회사**

**결제사업부 영업팀 박지혜 대리 앞**